

의안번호	제 114호
의 결 연 월 일	2022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22년 10월 31일

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

충청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14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22년 10월 31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종전의 「환경교육진흥법」이 「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로 전부개정(2022. 1. 6. 시행)되는 등 개정된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새로이 반영하고, 충청북도 환경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조례의 제명 변경(안 제명)
 - (현행) 「충청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」 →
 - (개정) 「충청북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
-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(안 제2조 및 제3조)
- 학교 및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지원(안 제4조 및 제5조)
- 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 등(안 제6조)
- 충청북도 환경교육센터 지정(안 제8조)
- 환경교육 실시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(안 제9조)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해당없음

5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
6. 비용추계서 : 붙임

충청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충청북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, 충청북도민의 환경학습권 보장을 통해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갖추게 함으로써 충청북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환경교육계획의 수립) ① 도지사는 「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조제1항에 따라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충청북도 환경교육계획(이하 “환경교육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환경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
2.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
3.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환경교육의 추진 내용
4. 환경교육계획 이행평가 및 재원조달 방안

5.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도지사는 환경교육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충청북도교육감, 시장·군수 등(이하 “관계 기관의 장”이라 한다)과 협의하여야 한다.

④ 도지사는 환경교육계획을 확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3조(환경교육계획의 시행)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이 제출한 추진실적을 종합적으로 분석·평가하고, 그 결과를 다음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여야 한다.

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분석·평가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.

제4조(학교환경교육의 지원) 도지사는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1.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
2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
3.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
4.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5조(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) 도지사는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.

1. 사회환경교육의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
2. 공공기관,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
3.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
4.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

5.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6조(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)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회환경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.

1.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·교구의 개발·보급
2. 도 환경교육센터 및 시·군의 기초환경교육센터와의 연계·협력
3. 도내 민간단체, 시·군, 학교, 사업장 등에서 시행하는 환경교육의 지원

제7조(공무원에 대한 환경교육) ①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1시간 이상의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한다.

제8조(환경교육센터의 지정) ① 도지사는 법 제25조에 따라 지역 내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충청북도 환경교육센터(이하 “도 환경교육센터”라 한다)를 지정할 수 있다.

1. 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·교구의 개발, 보급 및 지원
2.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
3. 도민환경교육의 실시
4. 환경교육계획의 수립, 이행 및 평가에 필요한 연구·조사 지원
5. 국가환경교육센터 및 시·군의 기초환경교육센터와의 연계·협력
6.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에 관한 사항
7. 시·군의 기초환경교육센터에 대한 지원
8. 도내 민간단체, 시·군, 학교, 사업장 등에서 시행하는 환경교육의 지원
9.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

② 도 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작성하고, 운영계획서와 도 환경교육센터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도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발급하고, 그 사실을 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.

제9조(재정지원) 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도 환경교육센터에서 수행하는 환경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② 도지사는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초환경교육센터·학교·법인·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0조(관계 기관 협조) 도지사는 환경교육 관련 시책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환경교육계획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「충청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」 제3조에 따라 수립된 충청북도 환경교육계획은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.

제3조(환경교육센터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「충청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」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충청북도 환경교육센터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충청북도환경교육센터 지정신청서 (제8조제2항 관련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일	처리기간	30일
신청인	기관명		대표자	
	주소	전화번호	휴대전화번호	
	전자우편주소			
신청내용	환경교육센터 명칭		대표자	
	환경교육센터소재지		전화번호	
	개설예정일			

「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5조 및 「충청북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8조제2항에 따라 충청북도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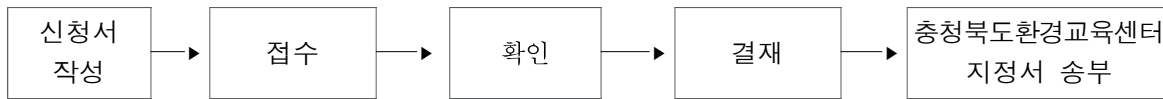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충청북도지사 귀하

첨부서류	1. 환경교육센터의 운영계획서 1부 2. 충청북도환경교육센터의 지정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	수수료 없음
------	--	-----------

처리절차



신청인

처리기관: 충청북도(환경교육업무 담당부서)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]

제 호

충청북도환경교육센터 지정서 (제8조제3항 관련)

1. 기관명:
2. 대표자:
3. 소재지:
4. 지정기간:

「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5조 및 「충청북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8조제3항에 따라 위 기관을 충청북도환경교육센터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충청북도지사

직인

관련법령 발췌

□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제6조(시·도 환경교육계획의 수립)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는 국가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의 환경교육계획(이하 “시·도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시·도지사는 시·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7조(국가계획 및 시·도계획의 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 등)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국가계획 또는 시·도계획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국가계획 또는 시·도계획을 소관 업무에 반영한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추진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다음 국가계획을 수립할 때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계획 및 시·도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3조(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.

1.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
2. 국가기관, 군부대, 기업 및 사회·종교 단체 등에서의 사회환경교육
3.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
4.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사회환경교육에 대한 지원

5.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제15조(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 등) ① 시·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환경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사회환경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② 환경부장관 및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회환경교육기관 중 창의적 교육프로그램을 개발·운영하거나 우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등 환경교육을 우수하게 실시하는 사회환경교육기관에 대하여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③ 시·도지사는 사회환경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
1.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2.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

④ 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절차·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

제24조(국가환경교육센터의 지정)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. 다만, 해양환경교육 분야에 관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.

1. 환경교육교재 및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
2. 국가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연구 및 조사
3.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
4. 제25조제1항에 따른 광역환경교육센터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초 환경교육센터에 대한 지원
5.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
6.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

②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지정요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

으로 정한다.

제25조(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) ① 시·도지사는 지역 내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광역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.

1. 환경교육교재 및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
2.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·도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연구 및 조사 지원
3. 제2항에 따른 기초환경교육센터에 대한 지원
4. 제24조제1항에 따른 국가환경교육센터 및 이 조 제2항에 따른 기초환경교육센터와의 연계 및 협력

②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)은 지역 내 주민 등에 대한 환경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·도지사와 협의하여 기초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.

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광역환경교육센터 및 제2항에 따른 기초환경교육센터(이하 “지역환경교육센터”라 한다)에서 수행하는 환경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④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요건은 제24조제2항을 준용하되, 그 밖에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·도 또는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3조(시·도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)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의 환경교육계획(이하 “시·도환경교육계획”이라 한다)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.

1. 지역 환경교육을 위한 기반 구축
2. 시·도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환경교육의 추진 내용

3. 시·도환경교육계획의 이행, 이행평가 및 평가 결과의 환류(還流)
4. 시·도환경교육계획의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
 - ② 시·도지사는 시·도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감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.
 - ③ 시·도지사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시·도환경교육계획 추진 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 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·도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제14조(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요건) 법 제15조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.

1. 법인·단체의 정관 또는 설립목적에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것
2.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자격을 부여받은 환경교육사 1명 이상을 상시 고용할 것

제18조(국가환경교육센터의 지정)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국가환경교육센터(이하 “국가환경교육센터”라 한다)의 지정요건은 별표 2와 같다.

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신청기관의 인력,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등을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.

④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국가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, 그 사실을 환경부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.

⑤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환경교육센터에 법 제24조제

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□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제3조(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)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(이하 “사회환경교육기관”이라 한다)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에게 제출해야 한다.

1. 「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 제14조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

가. 설립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정관 또는 사업 운영 규정

나. 환경교육사 1명 이상 등을 상시 고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2.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사회환경교육 운영계획

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·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회환경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, 그 사실을 해당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.

③ 시·도지사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.

④ 시·도지사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기관에 알리고, 해당 시·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충청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- 충청북도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환경교육계획 수립 및 환경교육 센터를 지정·운영하고자 함

2. 비용 발생 요인

- 환경교육의 체계적 지속적 추진을 위한 5개년 계획 수립
- 환경교육센터 지정·운영

3. 관련조문

- 제2조(환경교육계획의 수립) 충청북도 환경교육계획 5개년 계획 수립
- 제8조(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등) 충청북도 환경교육센터 지정·운영

4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충청북도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**용역비 40,000천원**
※ 제3차 충청북도 환경교육종합계획 용역비 적용
- 충북환경교육센터 **운영비 150,000천원**
※ '22년 충북환경교육센터 운영비 적용

나. 추계 결과('22년부터 향후 5년간 총비용) : 830,000천원

- 용역비 80,000천원, 센터 운영비 750,000천원

다. 재원조달방안 : 도비 100%

5. 연도별 비용추계표

(단위 : 천원)

구 분	1차년도 (2022년)	2차년도 (2023년)	3차년도 (2024년)	4차년도 (2025년)	5차년도 (2026년)	계
총 계	190,000	150,000	150,000	190,000	150,000	830,000
기본계획 수립 용역비	40,000	0	0	40,000	0	80,000
센터 운영비	150,000	150,000	150,000	150,000	150,000	750,000